

의안번호	2211782
의 퇴 인	송재봉의원
회 답 일	2025.08.21.
추계번호	25C4025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 7억원, 2030년 7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21억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구분							
흡연에 관한 실태조사 (안 제9조의7)	700	—	700	—	700	2,100	4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의7 (흡연에 관한 실태조사)	-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함(제1항) - 담배의 종류별, 품목별 판매 현황 -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담배의 종류별, 품목별 현황 - 그 밖에 금연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-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9조의7 (흡연에 관한 실태조사)	○	○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한 결과로,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실태조사의 내용에 따라 추계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
 - 보건복지부가 수행 중인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준용
 - 개정안은 담배의 판매 현황과 연령별 선호 담배 등 담배 수요자와 공급자를 포괄하는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요자 및 공급자를 모두 설문 표본으로 하고 있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준용
 -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한방의료이용 조사를 위해 일반 국민(5,000명)과 입원·외래 환자(2,000명)를 표본으로 하고 한약소비실태조사를 위해 한방병의원(2,000개소)과 한약조제판매기관(1,000개소)을 조사하는 등 공급자와 수요자를 포괄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
 - 2021년부터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와 한약소비실태조사를 각각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2024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 3억 6,600만원, 2025년 한약소비실태조사에 3억 5,000만원을 배정함
-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, 운영경비, 회의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
 - 흡연 실태조사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준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설문을 분리하여 진행하되, 각 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는 한방 및 한약 실태조사와 달리, 한 해에 두 조사를 동시에 수행하고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추계 첫해인 2026년과 2028년, 2030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, 조사비는 2025년 한약소비실태조사 예산을 준용한 7억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에 따라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원, 2030년 7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21억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700	-	700	-	700	2,100	4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